

VI 임신·출산·육아·교육

VI-1 임신·출산

1. 임신했을 때

임신하여 출산예정인 경우 시정촌에 신고하면 모자건강수첩이 교부됩니다. 이 수첩은 임신에서 출산 및 그 후 7년간 필요한 예방접종 등의 기록을 남기는 중요한 수첩입니다. 시정촌에 따라서는 모자건강수첩의 외국어번역본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자건강수첩의 영어·중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한국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필리핀어·베트남어 역판 (공익재단법인모자위생연구회 발행) 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통신판매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익재단법인모자위생연구회 [URL http://www.mcfh.or.jp](http://www.mcfh.or.jp)

본부사무소 ☎03-4334-1151 서일본사무국 ☎06-6941-4651

2. 비용

보통 임신출산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건강보험부터 일정액 (약 42만엔) 의 출산비용이 지급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출산후에는 4~5일의 입원이 필요하며 입원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40만 ~ 50만엔정도이나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출산육아 일시금의 의료기관 직접 지불·수령 대리제도를 이용하면 고액의 분만비용을 의료기관에 먼저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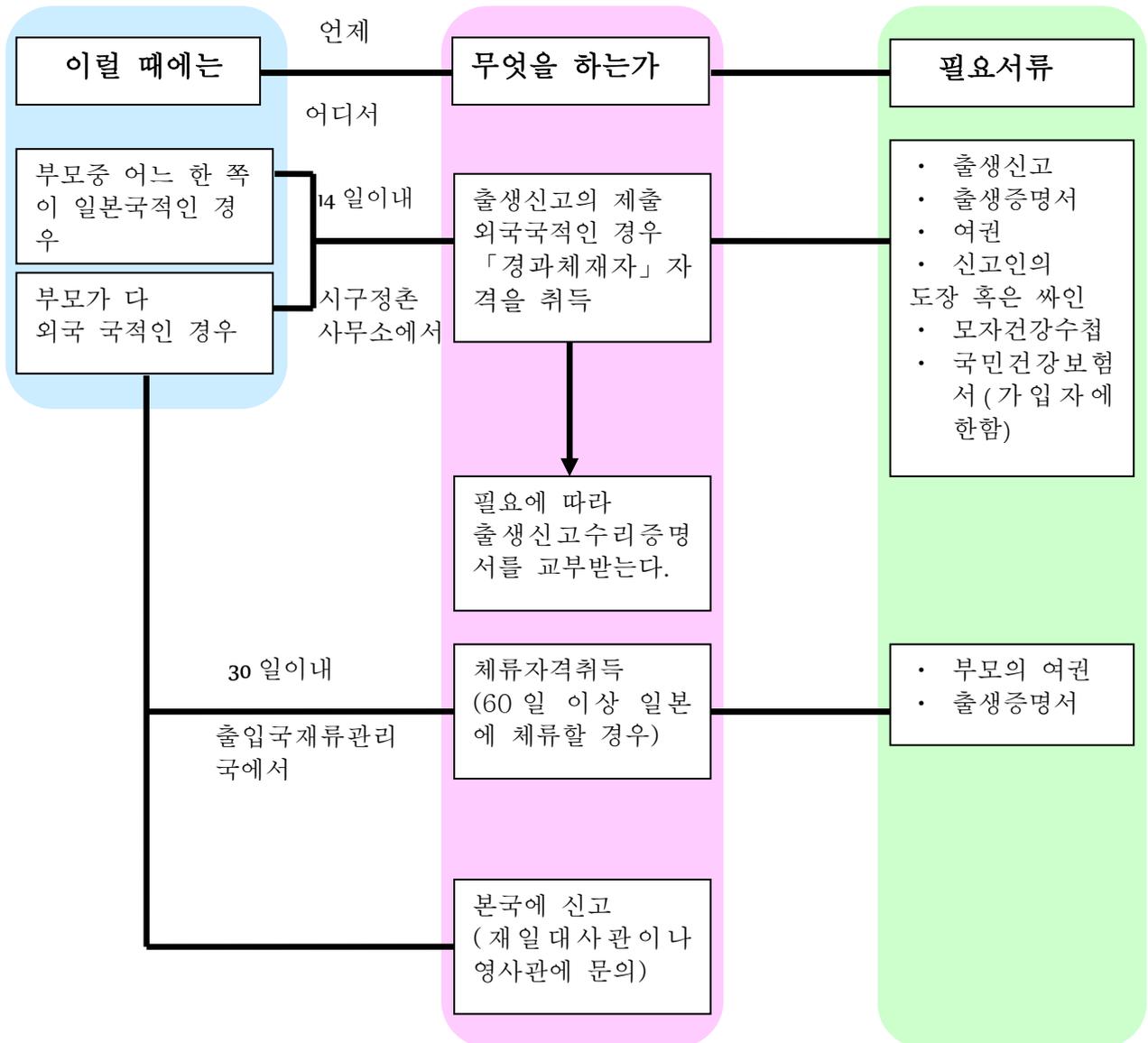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출산비용신청은 시청에서 합니다. (부록IX-1)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없는 경우 임신부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조산시설로의 입소, 출산비용을 원조하는 「조산제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구정촌 복지과나 보건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소득액에 따라서는 자기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임신 중 등에 대한 원조

임신 중에는 일정 기간마다 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정촌에 따라서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진단을 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 시구정촌 혹은 시정촌 보건센터 (부록IX-3) 로 문의해 주십시오.

4. 출산



(1) 출생신고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나 조산사에게 「출생증명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부모가 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아이가 일본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시구정촌사무소 앞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생에 따른 경과체재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시구정촌사무소에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교부받아 아이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재일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신고해 주십시오.

(2)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아이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재류자격취득신청」을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